

패션코드 공동주관 양해각서

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 이라 한다)와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 라 한다)는 패션코드(이하 “코드” 이라 한다)을 공동주관 하기로 합의하고,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약은 “진흥원” 과 “연합회” 가 패션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통한 국내 패션 브랜드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, “코드” 개최에 대한 공동 주관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추진 기본원칙)

- (1) “진흥원” 과 “연합회” 는 패션코드 2016 S/S, 2016 F/W 2회를 공동 주관한다.
- (2) “진흥원” 과 “연합회” 는 패션산업의 발전에 협력하고, 상호간 신뢰에 의하여 “코드”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.
- (3) “진흥원” 과 “연합회” 는 “코드” 를 공동주관을 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사무국을 구성하고,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해 정하며, 기타 사항은 양 기관의 관련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(4) “진흥원” 은 패션문화마켓을 추진하기 위한 위탁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추진사무국의 업무를 추진한다.
- (5) “연합회” 는 패션문화마켓의 참가브랜드 모집과 행사후원사 모집을 추진한다.

제3조 (공동주관 내용) “진흥원” 과 “연합회”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 주관한다.

1. “코드” 행사의 기획 및 실행계획 수립
2. “코드” 행사추진을 위한 사무국 구성 및 운영
3. “코드” 행사 후원사의 모집
4. “코드” 행사 바이어 초청 및 관리
5. “코드” 문화행사의 기획 및 실행
6. “코드” 홍보 및 주요 매체 관리
7. “코드” 행사 참여 브랜드 모집
8. 상기 각호 외 공동으로 추진 협의 업무

제4조 (후원사의 모집 및 비용)

- (1) “진흥원” 과 “연합회” 는 “코드” 의 현금 및 현물 후원사를 모집하고, 후원사의 기준 및 권리에 대하여 상호 합의 진행한다.
- (2) “코드” 의 자금 집행 및 관리는 “진흥원” 이 하고, 후원금은 “코드” 행사 운영 사업비로 사용한다.
- (3) “연합회” 가 모집한 현금 후원금에서 “연합회” 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행사 운영 사업비에서 지급한다.

제5조 (디자이너 브랜드 모집)

- (1) “연합회” 는 “코드” 의 참여브랜드 모집에 책임을 지며, 참여브랜드 선정에 대하여 “진흥원” 과 상호 합의하여 진행한다.
- (2) “연합회” 는 직접 모집한 참여브랜드의 참가비 중 50%를 “연합회” 의 사업추진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. 단, 참가비 중 패션쇼 등 부대비용은 제외한다.

제6조 (협력기관 모집)

- (1) “진흥원” 은 “코드”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내 패션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, “연합회” 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.
- (2) “진흥원” 과 “연합회” 는 상호 합의하여 해외의 패션관련 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력을 추진하고, 계약 및 합의를 추진할 시에는 상호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 (양해각서의 이행) “진흥원” 과 “연합회” 는 협력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양해각서에 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.

제8조 (비밀유지) “진흥원” 과 “연합회” 는 상호 받은 자료와 정보를 이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누설(열람 또는 복사 등을 포함)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9조 (효력 및 협약기간) 이 양해각서는 “진흥원” 의 원장과 “연합회” 의 회장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제10조 (협약의 변경) 협약내용의 변경사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11조 (기타사항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.

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3월 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(사)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

원 장 송 성 각



회 장 이 상 봉

